

이동식크레인 (차량탑재형) 탑승설비 부착 금지



중대재해 발생현황

이동식크레인(차량탑재형)의 최근 6년간 총 재해건수는 44건(사망 49명, 부상 10명)
그 중 **불법 탑승설비 부착**으로 인한 재해 건수는 총 18건(사망 23명, 부상 6명)으로 약 41% 차지

2016. 12.
사망 3명
부상 1명



2015. 7.
사망 2명



2013. 7.
사망 2명



관련법령

〈자동차관리법〉

제34조(자동차의 튜닝)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※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
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〉

제86조(탑승의 제한)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 사례

신호등 설치·해체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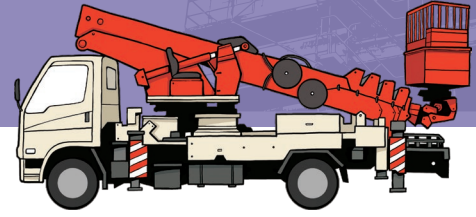
수목 전지 작업



간판 설치·해체 작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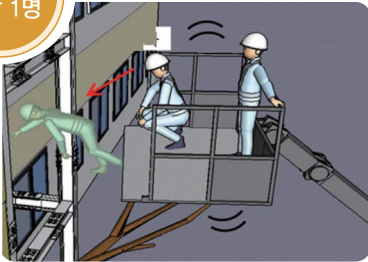
고소작업대 (차량탑재형) 안전난간 해체 금지



중대재해 발생현황

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)의 최근 6년간 총 재해건수는 55건(사망 64명, 부상 15명)
그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1건(사망 21명)으로 약 38%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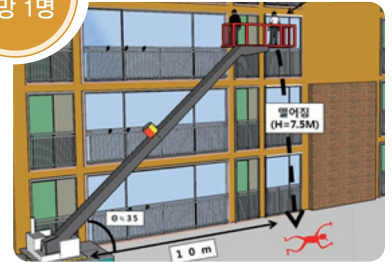
2018. 4.
사망 1명



2017. 9.
사망 1명



2017. 6.
사망 1명



관련법령

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〉

제36조(사용의 제한) 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 ※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〈안전인증고시_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〉

42.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
안전난간 미설치 및 불법개조 사례

안전난간(전면) 미설치



안전난간(전면) 미설치



작업대 임의해체 및 원치 변경

